

2006. 1. 17(화) 10:00
제1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① 거창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②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① 거창군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1. 검토경과

- 가. 발 의 자 : 정종기 의원 외 11명
- 나. 발의일자 : 2006. 1. 10
- 다. 의안번호 : 제2006 - 1호
- 라. 상정일자 : 2006. 1. 19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호국을 위한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에게는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원대상자는 6·25 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한 군인, 경찰, 학도호국단, 소년병 중 1년 이상 거창군내에 거주한 자로 하며, 국가보훈처장이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원받는 자는 제외함.
(안 제2조, 제3조)
-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월1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관내 관광지 무료입장과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료를 감면토록 규정함(안 제4조)
- 조례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하되, 금전지급에 대한 조항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승인 익월부터로 규정함(안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들의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전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하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의원발의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거창군이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한 참전명예수당 월1만원과 장제보조비 15만원 지급, 관광지입장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동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의 지원대상자 범위에서는 월남전 참전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금번 조례안에서는 6.25참전자로 한정된 것에 대하여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6·25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의 성격이 상이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4조의 지원대상사업중 공영주차료 감면에 대하여는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자를 제외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1/2만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동시에 개정하는 것은 별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행정의 편의에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2006.1현재 거창군내 6·25참전유공자 등록자 수는 737명(군

인661명, 경찰63명, 기타13명)으로 연간 소요예산액은 99,495천원(참
전명예수당 88,440천원, 사망위로금 11,05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② 거창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1. 검토경과

가. 발 의 자 : 정연명 의원 외 11

나. 발의일자 : 2006. 1. 10

다. 의안번호 : 제2006 - 2호

라. 상정일자 : 2006. 1. 19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노인공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수노인에 대한 장려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급대상 장수노인 연령은 만85세 이상으로 하고 지급금액은 월 3만원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4조)

○ 장수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은 부양가족 또는 이장이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장수수당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도내 남해군을 비롯한 전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지원대상 연령을 85세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수지수의 기준을 85세로 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수수당을 3만원으로 한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검토됨.

< 타시군 지원 사례 >

- 창원시 : 85세 이상 월 35,000원
- 함안군, 청주시 : 85세 이상 월 3만원
- 남해군 : 85세 이상 월 2만원, 90세 이상 월 3만원
- 함양, 합천군 : 85세 이상 월 2만원
- 대전 유성구 : 10년 이상 거주, 90세 이상 월 2만원
- 서울 도봉구, 울산 북구, 용인시 : 90세이상 월 2만원

○ 2005. 11월말 현재 거창군내 85세이상 장수노인은 805명으로 장수수당 지급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액은 289,80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